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129 |
|----------|------|

발의연월일 : 2022. 9. 2.

발의의원 : 김보경 의원,  
박영동 의원, 신달호 의원

## 1. 제안이유

-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 및 군민의 책무(안 제3조)
- 다. 사업추진 및 지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안 제4조~제5조)
- 라. 비밀엄수와 시행규칙(안 제6조~제7조)

## 3. 제정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제5호, 제8호,  
「아동복지법」 제4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학대, 따돌림 등 고통스러운 사건·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주는 증상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모든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수가 추진하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

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 조사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민간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제1항 각 호 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제5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군수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약칭: 청소년복지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 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8호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